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538
----------	-------

제출년월일 : 2024. 9.30.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2024년 일몰 도래 감면 조항에 대하여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반영하고
-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세정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안 제2조)
- 법령 조항 문구를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화 및 명료화(안 제1조 ~ 제2조)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문화재’ 용어가 개정되어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도록 조항을 정비(안 제4조)
- 기타 띄어쓰기, 용어·표현을 재정비

개정조례안 :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3】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붙임 4】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입법예고 : 2024. 8. 16. ~ 2024. 9. 5. (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 5】

○ 방침결정문 : 【붙임 6】

[붙임 1]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를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 “감면” 을 “감면 등” 으로, “규정하여” 를 “규정함으로써” 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각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시각장애인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 상태를 확인한 결과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용도, 면제 방법, 적용 범위, 자동차의 소유 여부 등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를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로, “문화재로” 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로 한다.
 제7조의4제2항 본문 중 “다른 지역내” 를 “따라 특구로 지정된 지역내” 로 한다.
 제11조 단서 중 “인하여 영업” 을 “영업” 으로 한다.
 제13조 중 “감면함에 있어” 를 “감면할 때” 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한다.
 제15조 후단 중 “준용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한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실·과		세정과
입 안	실·과장 직위·성명	세정과장 김 운 학
	담당·팀장 직위·성명	세정팀장 권 혁 세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허 강 숙 (행정 2198)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u>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① 「<u>장애인복지법</u>」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u>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u>”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u>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u>[「<u>지방세특례제한법</u>」 (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u>장애인복지법</u>」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u>장애인</u>”이라 한다] 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u>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u>」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u>가족관계등록부</u>”라 한다)에 의하여 그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p>	<p>제1조(목적) -- <u>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u> ----- <u>감면 등</u>----- <u>규정함으로써</u> ----- -----.</p> <p>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① 「<u>지방세특례제한법</u>」 (이하 “<u>법</u>”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각장애인 중 「<u>장애인복지법</u>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p>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 “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2.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④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른 자동차세 또는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2조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받은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시각장애인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 상태를 확인한 결과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용도, 면제 방법, 적용 범위, 자동차의 소유 여부 등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

<삭제>

자동차(이하 “면제자동차” 라 한다)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면제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2항에서 이전 2020.10.7.>

⑤ 면제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삭 제>

제4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②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4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

-----.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감면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조(도시형공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 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4(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지역내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

-----.

제7조(도시형공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

----- 「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
조-----

-----.

-----.

제7조의4(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라
특구로 지정된 지역내-----

-----.

0조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제14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은 영 제127조를 준용한다.

-----.

제11조(감면 제외대상) -----

-----.
----- 영업 -----
-----.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
----- 감면할 때 -----
-----.

제14조(감면 신청) ① -----

----- 따른 -----
-----.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

-----.
----- 따른다. -----